

# 汎用프로그램 開発準備金制度 導入의 切実性

## 1. 2000年代 韓国 経済・社会 先進化 要件

2000年代 韓国経済・社会 先進化を 前提要件으로서 情報産業의 체계적 육성에 의한 高度情報化社会 실현, 世界貿易思想 및 構造變化에의 능동적 대처, 雇傭構造 변화에의 사전대처 등이 지적되고 있다.

즉 産業의 情報化로 産業競爭力 강화, 經營 및 管理能率의 극대화가 추구되어야 하고 産業社会에서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国民欲求增大와 質의 高度化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高度情報化社会의 실현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情報處理産業을 중심으로 한 情報産業의 체계적 육성과 이용자 지향적인 政策開発이 절실하다.

世界貿易環境 역사 知的所有權에 대한 가치유지 관리고조와 보호의식이 강화되는 가운데 先進各国의 尖端情報産業 分野에 대한 集中投資와 資源의 總動員 투입이 중시됨에 따라 開途国家에서의 勞動集約의 産業의 比較 優位性은 점차 상실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情報의 武器化・技術革新 등으로 서비스 貿易의 自由化 비중이 급증함과 동시에 情報의 效率적 管理能力이 商品・서비스 生産成果의 要諦가 될 것인바, 이에 대한 능동적 대처전략이 진요한 것이다.

동시에 科學技術의 産業化와 尖端技術 발전에

따른 雇傭量 감소, 労動力의 질적 변화 등 雇傭構造变化에 대하여도 事前対応策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情報化社会 실현을 위해 그 主役産業으로서 S/W産業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특히 S/W技術은 情報化의 진전을 좌우하는 核心基盤技術로서 우리나라가 2000年代 高度情報化社会 실현, 先進經濟・技術國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S/W 技術力 振興이 핵심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現 経済・社会与件에 비추어 볼 때도 S/W产业育成의 절실성은 명확히 부상되고 있다. 즉 S/W力低劣이 国内 情報産業의 원활한 成長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고 있어 情報産業 分野別 불균형 심화에 따른 불이익이加重되고 있다.

또한 우수두뇌・高学力人力 등 国家資源의 最適活用与件을 갖추어 4～5년 후의 高等失業群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도 S/W产业育成이 절실하다. 전국 247개 대학중 147개 대학, 337개 학과의 1987학년도 情報産業 관련 신입생은 전체 총 신입생의 13.1%인 3만 6,142名으로 집계되었는데 86年度 졸업생 취업률은 48.3%에 불과하여 이들에 대한 일자리 마련은 긴요한 실정인 것이다.

더욱 주목하여야 할 점은 各 分野의 情報化 진전으로 H/W 비중이 1955年 18%, 1980年 70%에서 1990年에는 9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이에 따라 S/W产业은 세계적으로 高附加価値・高成長이 예측되는 輸出 有望産業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이다. 美国 情報處理産業協会

編輯者 註：本稿는 韓國情報産業聯合會에서 發行한 「情報産業」 87年 11月號에서 발췌했음。

(ADAPSO) 推計에 따르면 美国 情報処理市場 규모가 1975年 50억 달러, 1985年 500억 달러에서 2000年에는 2,000억 달러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日本에서도 역시 1980年 6,699억 엔에서 2000年에는 34조 3천억 엔 규모로 전망되고 있다.

## 2. 韓國 情報処理産業 実相

그러나 韓國 情報処理産業의 실정을 보면 규모면에서 美国과 日本에 비해 106배와 22.7배의 격차로 저위에 있음이 本会 구조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同産業의 公급측면에서는 輸入依存度가 44.8% 수준으로 높은 반면, 輸出比重은 4.2%로 극히 낮아 對外 競争力은 허약한 실정이다.

産業歴史를 볼 때도 同業種內 77.6%의 企業이 1980年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밝혀져 이미 1975年 이전에 62.7%의 기업체가 설립·운영되어 오고 있는 日本에 비해 技術·마케팅력 등 경영능력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労動環境侧面에서도 1987年中 종업원 이직률이 8.1%로 全体産業 平均 3.5%나 製造業 平均 4.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어 産業基盤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곧 勤務環境의 안정성 부족으로 생산성 향상에 沮害要因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한다.

S/W技術開発力 部門에서도 1986年中 S/W 技術人力이 9,775名으로 推計되었는데 이는 1985年 日本 同部門 人力 14만 5,007名의 6.7% 수준에 불과하여 技術開発基盤이 크게 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S/W人力 구성에서 高級技術者 비중이 5.8%에 머물러 技術人力의 질적 향상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S/W開発実績에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高級技

術이 요구되는 시스템S/W의 開發比重은 7.5%에 그쳤고 公用S/W開發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비중을 두고 있어 우리의 S/W技術水準이 劣位에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企業体質面에서는 企業資產 중 有型固定資產의 비중이 13.6%로 낮아 현재의 担保金融制度下에서 外部 金融調達을 원활히 뒷받침 할 수 있는 담보력이 미약하여 資金動員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資本剩餘金, 利益剩餘金 등 企業內 留保資金 역시 빈약하여 内部資金動員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企業損益面에서도 売出規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売出原価, 営業外費用, 特別損失 등 諸經營關聯費用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써 当期純利益을 실현하지 못한 부실한 영업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 3. 汎用프로그램 開發準備金制度 導入 方案

韓國 情報処理産業은 그 성장·육성의 절실성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시장 유통측면에서 S/W에 대한 商品性認識이 크게 결여되고 있는 점이다.

즉 汎用性 있는 S/W에 대한 商品으로의 인식부족은 民間業界의 S/W開發意慾을 저하시켜 産業成長基盤 구축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 S/W需給方式을 注文生産体制에서 商品生産体制로의 転換을 유도하여 汎用性 있는 프로그램의 開發·普及 측면에 의한 S/W 産業跳躍基盤을 다져 나감과 동시에 이용자의 S/W開發·購買費用 부담을 절감시키는 대응책이 우선적으로 긴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対応策의 일환으로 業界는 汎用프로그램 開發準備金制度의 導入을 간절히 妥協하여 왔다.

현행 우리나라 租稅法에서 인정하고 있는 準備金制度는 証券去來準備金, 投資準備金, 鉱業投資準備金, 技術開發準備金, 海外事業損失準備金, 輸出損失準備金, 價格變動準備金 등 13개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準備金制度들은 一般 鉱業, 製造業 및 他 技術用役業 등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制度의 내용 즉 積立主体, 積立對象, 積立方法 등에서 볼 때 S/W産業과는 무관한 것들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情報文化 暢達을 위해 절실한 情報處理產業의 振興政策의 긴요성을一應 강조하면서 汎用프로그램 開發을 촉진할 수 있는 별도의 準備金制度 도입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특히 이와 같은 準備金制度는 그 특성상 정부 입장에서 볼 때 租稅의 전면 면제가 아닌, 一定期間 이후로의 納稅유예에 그칠뿐 아니라 지원 장치 마련정도로서 政策效果가 크다 할 것임으로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總理令 등을 통하여 汎用프로그램 登錄制度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의 主內容으로는 同制度에서의 登錄對象 프로그램을 汎用性과 商品性이 있는 국내에서 開發된 S/W로 하되, 게임 · 오락 등 비업무용 S/W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S/W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S/W 業을 영위하는 法人 또는 個人이 個別프로그램 또는 판매 가능한 서브 프로그램도 등록대상으로 할 것이 요청된다.

나아가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上 프로그램 登錄과 連繫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해 同 保護法上 登錄實務業務를同一 民間協會 機關이 수행할 수 있게 한다면 2重登錄의 번거로움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本 登錄制度에 의해 등록된 S/W가 保護法上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保護法의 등록에 따른 권리가 발생되도록 운용의 신축성을 보완하면 실효

성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汎用프로그램 登錄制度는 汎用性 있는 S/W를 상품으로서 개발 · 유통되게 하자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汎用프로그램 便覽」을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토록 하고 業界 · 學界 등 民間人士들을 중심으로 「汎用프로그램 民間審議委員會」를 구성하여 登錄對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審議토록 하는 한편, 政策當局에도 프로그램流通 · 促進에 관한 業界意見을 전의토록 하는 기능을 부여하면 합리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汎用프로그램登錄制度 시행과 함께 汎用프로그램準備金制度를 도입 · 실시가 절실히 것이다.

즉 租稅減免規制法에 「프로그램準備金」制度를 제정, 上記 登錄制度에 의거 프로그램을 登錄한 者에게 대하여租稅支援(納稅猶予)을 함으로써 S/W産業 体质強化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準備金 積立對象은 등록된 프로그램의 판매 수입금액이나 당해 프로그램 판매에 수반하여 정보처리에 관한 專門의 지식 · 기술 등 彙務提供에 따른 收入金額으로 하고, 積立限度는 積立對象 金額의 50%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同準備金 처리방법은 4年 据置後 4年間 균등 분할상각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이다.

日本의 경우도 同制度가 1979年부터 租稅特別措置法에 의거 시행되어 옴으로써 日本 S/W産業의 성장 기틀이 다져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日本에서의 汎用프로그램開發準備金은 S/W業을 영위하는 法人이 日本 国内에서 개발하여 普及促進을 회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情報處理振興協會(IPA)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準備金 積立金額은 汎用프로그램의 양도 또는 이와 관련된 彙務提供에 의한 收入金額으로 하

되 積立率을 1983年까지는 同收入金額의 50%까지 하였으나 현재는 30%로 조정·시행되고 있다.

準備金으로서 換金算入한 積立金의 還入方法은 4年의 据置期間을 거친후 4年間 균등 분할益金還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法人税 確定申告時 IPA(日本情報処理振興事業協会)가 발행하는 汎用프로그램 등록증명서를 첨부도록 하여 이를 확인토록 하고 있는 점이다.

日本에서의 汎用프로그램登録制度는 컴퓨터프로그램 保護制度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 등록제도와는 구별된다.

後者의 등록은 당해 S/W에 대한 著作権 내지는 法律的 권리를 명백히 하기 위함인데 반해前者의 汎用프로그램 登錄은 프로그램의 商品性提高와 汎用프로그램開発 및 流通促進에 의한情報化促進 기반조성을 위해 1979年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日本 汎用프로그램登録制度에서 등록허가한 프로그램은 電子計算機 利用 또는 利用技術을 고급화 할 수 있는 高級S/W의 기본적인 改變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 가능한 S/W로서 自國內에서 개발된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이들 S/W를 바로 準備金 적립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登錄者 資格은 S/W業을 영위하는 法人 또는 個人으로서 자기 부담으로 개발하고 당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者, 또는 IPA의 위임을 받아 개발하고 그 普及義務가 있는 者로

하고 있다.

登錄의 単位는 당해 프로그램에 몇개인가의 서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서브 프로그램 단위 등도 購買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들 서브 프로그램도 등록할 수 있다.

등록신청은 S/W情報센터(SOFTIC)에 分期 単位로 年 4回하되, 유효기간은 2年이며 신청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登錄関聯書類는 汎用프로그램登錄 및 登錄證明書交付申請書, 著作者의 概要 説明書, 시스템 説明書, 導入 解説書, 이용자 메뉴얼 등이다.

1979年 이후 1985년까지 日本에서의 汎用프로그램 등록실적은 약 5,100件으로 年間 850件씩 등록된 것으로 보아 同制度가 매우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상은 같은 日本에서의 例와 우리나라의 S/W産業実相을 함께 고려할 때 우리도 汎用S/W登録制度와 함께 準備金 制度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데는 再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情報処理産業은 1980年代 이후 生成되기 시작한 幼稚産業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産業政策의, 租稅, 金融政策의 側面에서 유효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汎用프로그램에 대한 등록제도와 準備金制度는 S/W産業 도약의 획기적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음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